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62호 2011. 12. 13.(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 1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 2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3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30호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5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58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 -----	62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8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7급 8명과 8급 10명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한 증원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미 전환하여 발생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8% 이상	10% 이내	2%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2% 이내	31% 이내	6%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44% 이내	39% 이내	6%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7% 이내	30% 이내	40% 이내	13% 이상	10%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80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34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9	22	2	6	1	18
6급 이하 계	679	-				
별정직 계	3	-				
6급 상당 이하 계	3	-				
기능직 계	65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의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나. 추계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다. 재원조달 방안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하며,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표시)

4.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원 채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동 약가기준액표에”를 “이 약가기준액표에”로 하고,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치과진료중”을 삭제하고, “진료수가”를 “진료수가 및 검사수수료”로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동 지침에서”를 “그 지침에서”로 한다.

별표 1의 10. 1통 초과발급란 다음에 11. 방사선영상 CD사본 교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11. 방사선영상 CD사본 교부	1매	1,500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기 타 수 가(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기 준	수수료(원)	비고
1. 치과 진료수가	가. 치석제거술	전체치아	30,000	
	나. 치면열구전색	1치아당	5,000	
	다. 불소도포	전체치아	5,000	
2. 검사수수료	골밀도 검사	1회	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대상자 · 관내거주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은 제외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기초생활보장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장학금"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6. "차상위계층"이란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에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자활근로사업을 포함한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 노인복지사업기금,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제2장 사회복지사업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비용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7.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민
2.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3.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9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7조제6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거주지 동장이 추천한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학비지원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별로 배정하고,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장학금 지급시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2. 동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 제10조에 따른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학년 초 선발된 장학생은 제13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3조(지급정지) ① 제11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
 2. 퇴학·정학처분 또는 휴학 등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보호자 또는 본인이 다른 시·도(시·구·군 포함)로 전학 또는 전출하였을 경우
 4.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학년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3장 노인복지사업

제14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2.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운영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 오락,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제15조(지원대상)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2.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

제4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제16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초생활보장 자활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17조(지원대상) 제1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8조(지원신청) 제1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자활사업자금 운영)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은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비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

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기금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사업기금 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을 기관·단체에 교부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자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집행하여야 한다.

④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과 다문화가족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회의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

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의 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주민만족도 조사에 있어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구성은 평가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구에서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사실조사) ① 감사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고자의 신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등) 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

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제3조 관련)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피신고인 (부조리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 빙 서 류				
비 고				
<p>「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p>				

〔별표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1. 유형별 지급기준

구분	유 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1	제2조제3호가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	제2조제3호나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
3	제2조제3호다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 행위 신고 : 100만원 이내

2.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 을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업신고를 한 자” 를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 을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이라 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를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금의” 를 “기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위생 관리시설” 을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홍보사업 및” 을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을 “교육·활동 지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을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원” 을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를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을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 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지원” 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어려운” 을 “어려울”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개인사정에 의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6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를 “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

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이 조례에서 “동 단위 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7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해당 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구청장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민생활지원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하며, 위원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궐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동 단위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받아 위촉
2.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촉하고, 기존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

제8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결산보고에 관한 의견 수렴
3.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제12조(주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사람을 합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동 단위 단체 회원
 2. 각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 ⑤ 제4항 각 호의 모집인원, 추천할 수 있는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주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위원회 운영원칙) ①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주민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기능)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4.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5.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6.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주민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주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등) ① 주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단·실·국별 또는 2개 이상의 단·실·국을 합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주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공개) 주민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22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의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

무를 총괄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5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주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 제26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우편 및 인터넷,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② 구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2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지역위원회 및 주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28조(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30호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 지도위원 "이라 한다)" 를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하며,

제2조 중 "지도위원은"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을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3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또한, 제4조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연수기회의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부호를 삽입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공사에도 주민을 참여시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소인"을 "어린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인"을 "어른"으로 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봉사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자가 무료입장권을 요청할 경우 발급(단,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로서 1인 4매를 1회에 한하여 발급하고 무료입장권 소지자는 썰매장 이용가능)

제6조제2호 중 "5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명	기준	요금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할인요금	비고
사계절썰매장 (야외풀장포함)	어른	5,000원	2,500원	1회 입장 기준
	청소년· 어린이	3,000원	1,5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에 1인 이상을 배치하되, 별도의 장소를 마련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라 함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

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 2급 : 1천500만원

나. 3급, 4급 : 1천만원

다. 5급, 6급 : 500만원

라. 7급, 8급 : 200만원

마. 9급 : 100만원

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계약
5. 서구국민체육센터 등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6.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 ④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상자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민의 날 등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

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구의원
5. 법률전문가
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보 건 지 소	출장소	동
총 계		803	517	18	44	16	43	165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34	481	12	41	16	38	146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3	1	1	0	0	0
지방서기관		2	1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49	22	2	5	1	1	18
지방행정사무관		28	12	2				14
지방의무사무관		4			3	1		
지방시설사무관		3	3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농업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녹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농업·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공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약무사무관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6급 소계	159	120	3	7	3	8	18
지방행정주사	80	60	3			1	16
지방세무주사	4	4					
지방전산주사	1	1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공업주사	3	3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보건주사	2	2					
지방약무주사	1			1			
지방간호주사	2			2			
지방환경주사	4	4					
지방시설주사	13	11				2	
지방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4	3					1
지방행정·공업주사	2	2					
지방행정·농업주사	2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3	2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8	8					
지방행정·녹지주사	1	1					
지방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통신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세무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2	2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3	1		

지방간호·의료기술·약무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1				1		
7급 소계	231	160	3	12	6	16	34
지방행정주사보	92	55	3			1	33
지방세무주사보	27	22				5	
지방전산주사보	3	3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5	15					
지방공업주사보	9	8				1	
지방농업주사보	1	1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11	6		3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4			3	1		
지방간호주사보	5			4	1		
지방환경주사보	8	8					
지방시설주사보	34	29				5	
지방통신주사보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6	6					
지방행정·농업주사보	4					3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지방수의·농업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주사보	2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보	2				2		
8급 소계	226	145	2	15	5	12	47
지방행정서기	103	65	2	1			35
지방세무서기	11	8				3	
지방전산서기	5	5					
지방사회복지서기	18	8					10
지방공업서기	5	5					

지방농업서기	1	1					
지방녹지서기	4	4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서기	15	10		3		2	
지방의료기술서기	3			2	1		
지방간호서기	8			5	3		
지방환경서기	10	10					
지방시설서기	31	25				6	
지방통신서기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보건·공업서기	1	1					
지방보건·간호서기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1			0	1		
지방환경·공업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3			3			
9급 소계	63	30	1	1	1	1	29
지방행정서기보	37	14	1				22
지방세무서기보	4	3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8			1			7
지방공업서기보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8	8					
지방행정·환경서기보	1	1					
별정직 계	3	3	0	0	0	0	0
6급상당 소계	1	1	0			0	0
일반비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0			0	0
일반비서	1	1					
9급상당 소계	1	1					
일반비서	1	1					
기능직 계	65	32	6	3	0	5	19
6급 소계	7	7	0	0	0	0	0
지방통신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운전원	2	2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2	2					
7급 소계	28	9	4	1	0	3	11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2	1				1	
지방기계원	2	2					
지방운전원	15	2	1	1		1	10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8	3	3			1	1
8급 소계	25	12	2	2	0	2	7
지방교환원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운전원	16	6	1	1		1	7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7	4	1	1		1	
9급 소계	5	4	0	0	0	0	1
지방운전원	2	1	0	0			1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3	3				0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운용조례”를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운용조례”를 “운용 조례”로 하고, “제15조”를 “제9조”로 하며, “성취도 “미” 또는 “70점”이상인”을 “70점 이상인”으로 하고,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7조제2호”를 “제11조제2호”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3조제1호 및 제4호”를 “제7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3조제7호”를 “제7조제7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접객업소
6. 건강기능식품업소

제6조제1항제1호 중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한다.

별표의 1. 용자조건 구분란 중 “모범음식점 지원자금”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로 하고, 이자율란 중 “3%”를 “2%”로 하며, 2. 용자범위 중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